



#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교무실	☎ 821-3236
담당부서	☎ 821-3238
행정실	☎ 821-3235

주 소 우)1208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47 (<http://www.cheonghak.hs.kr/>)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본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,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드릴 말씀은 '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' 안내입니다.

경기도에서는 7월 1일부터 도내 만13~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「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」 상반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.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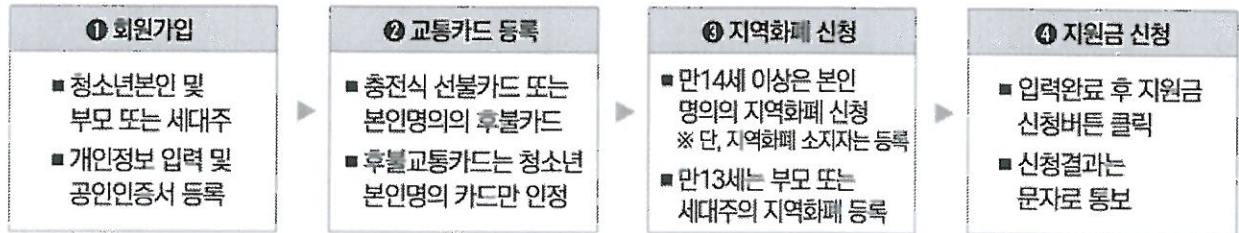
가. 신청기간 : 2020.7.1(수) 09:00 ~ 7.31(금) 18:00까지

- 신청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(공적마스크제와 동일)
- 청소년 본인은 7.1.(수)부터, 부모 및 세대주는 7.15.(수)부터

나. 지원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~23세 청소년

다. 신청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(<https://www.gbusepb.kr>)

라. 신청절차



- ※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
- ※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로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
- ※ 단, 김포시·성남시·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로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(김포 '착한페이', 성남·시흥 '지역상품권 chak')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됨

## 마.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

- ▶ 지원금액 : 상반기 6만원 (年 12만원 한도) ※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,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
- ▶ 지원비율 :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
- 만13~18세 : 실사용액×30% / 만19~23세 : 실사용액×15%

### ▶ 지급일정

연령 기준일	대상자 생년월일	교통비 신청기간	지급개시일
'20.01.01.	'96.01.02~'07.06.30.	'20.07.01.~07.31	'20.08월

▶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로 지역화폐로 지급 ▶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로 지역화폐로 지급

## 바.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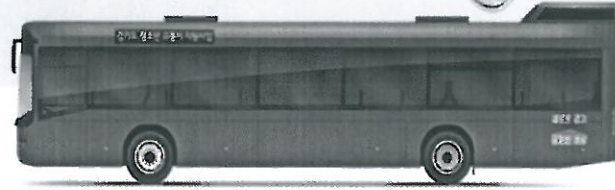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 안됨(필히 안내문 참고)
-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(031-120)

2020. 7. 1.

청 학 고 등 학 교 장



#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



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,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~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,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(연간 12만원 한도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신청기간 : 2020-07-01(수) 09:00 ~ 2020-07-31(금) 18:00 까지

▶ 청소년 본인은 7.1.(수)부터, 부모 및 세대주는 7.15.(수)부터 신청가능 ▶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

요일	월	화	수	목	금	토, 일
출생년도 끝자리	1, 6	2, 7	3, 8	4, 9	5, 0	모든 대상자 신청

\*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"7" 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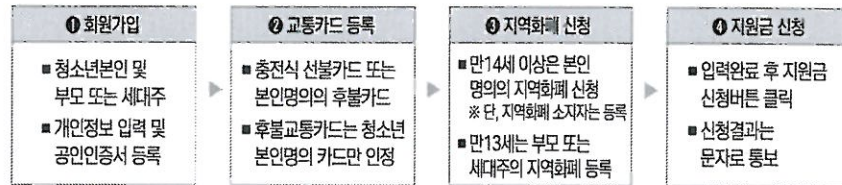
■ 지원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~23세 청소년

▶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(거주기간 제한 없음) ▶ 교통카드로 대중교통(버스, 전철)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

■ 신청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(<https://www.gbuspb.kr>)

• 네이버 검색창에서 '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'로 검색 • (소급신청)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

■ 신청절차



※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

※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로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

※ 단, 김포시 상남사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로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(김포·적현페이, 성남시흥·지역상품권 chak) 설치 후 회원가입인 하면 됨

■ 지원내용 : ▶ 지원금액 : 상반기 6만원 (연 12만원 한도) ※ 신청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, 미달되면 신청된 금액만 지급

▶ 지원비율 :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

• 만13~18세 : 실사용액×30% / 만19~23세 : 실사용액×15%

■ 지급방법 ▶ 지급일정

연령 기준일	대상자 생년월일	교통비 신청기간	지급개시일
'20. 01. 01.	'96. 01. 02. ~ '07. 06. 30.	'20. 07. 01. ~ '07. 31	'20. 08월

▶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로의 지역화폐로 지급 ▶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로의 지역화폐로 지급

■ 유의사항 : ▶ 청소년 교통비는 '20.1.1.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.

▶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로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.

▶ 단,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.

▶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·후 서울·인천버스·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·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. ※ 단, 서울·인천버스·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·공항버스·열차는 지원 제외

▶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.

중복지원 제외사업	①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, 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, ③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, ④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, ⑤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, ⑥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, ⑦ 오산시 자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, ⑧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, ⑨ 과천시 중고등학교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,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, ⑪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
-----------	--

※ 단, 국토교통부 광역일출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

▶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.

▶ "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"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(<https://www.gbuspb.kr>)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.

문의 경기도 콜센터 (031 - 120)